

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폐지이유

「도시계획법」 폐지(법률 제4541호, 폐지 2002.02.04, 시행 2003.01.01)에 따라 「도시계획법」에서 위임한 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」의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시계획법」 폐지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 폐지조례안

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조례」는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「구미시공업용지조성
조례」에 따라 지정하였거나,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
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소관 실·과		도 시 과
입 안 자	과 장	최 규 호
	담 당	전 환 엽
	담 당 자	유 준 민 (480-5405)